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70
----------	------

2025년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4. 1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4. 1

4. 상정일자 : 제3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4. 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국장 이동률)

- 본 안건은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남지역 및 관할 시군의 피해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및 향후 예비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에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보다 20%를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변경내용은 지출계획의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당초 1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전입 받고자 수입계획에 “예수금 수입”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액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670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가. 제안이유

- 1) 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48,238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 75명, 주택전소 3,265채, 이재민 6,323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
- 2) 특히 경상북도 및 안동시 등 관할 5개 시군에 피해가 집중되어 주택전소 3,239채, 인명피해 59명이 발생하였고 트랙터 등 농기계 2천여 대가 파손되는 등 시설물 정비와 이재민, 농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손길이 시급한 상황임
- 3) 서울시는 영남 지역의 피해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비와 농기계, 임시주택 등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함
- 4)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수입계획 변경사항]

- 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수받기 위한 “예수금수입”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액 5,00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함
- 2) 이에 따라 수입계획을 당초 2,873백만 원에서 7,873백만 원으로 최종 변경 하고자 함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873,441	7,873,441	5,000,000	174%
세외수입	100,898	100,898	-	-
경상적세외수입	98,177	98,177	-	-
이자수입	98,177	98,177	-	-
공공예금이자수입	98,000	98,000	-	-
기타이자수입	177	177	-	-
임시적세외수입	12,721	12,721	-	-
보조금반환수입	12,721	12,721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443	2,443	-	-
위탁비반환수입	10,278	10,278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2,543	7,762,543	5,000,000	181%
보전수입등	1,162,543	1,162,543	-	-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	-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	-
내부거래	1,600,000	6,600,000	5,000,000	312%
예탁금 및 예수금	-	5,000,000	5,000,000	신설
예수금수입	-	5,000,000	5,000,000	신설
전입금	1,600,000	1,600,000	-	-
기타회계전입금	1,600,000	1,600,000	-	-

[지출계획 변경사항]

3) 정책사업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항목의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에 5,000백만 원 증액 편성함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873,441	2,873,441	7,873,441	5,000,000	174%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136,400	2,196,400	7,196,400	5,060,000	237%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136,400	2,196,400	7,196,400	5,060,000	237%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51,600	351,600	351,600	-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000	1,000,000	6,000,000	5,000,000	5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	1,000,000	6,000,000	5,000,000	500%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 케팅 운영	277,000	277,000	277,000	-	-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472,800	472,800	472,800	-	-
약자와 함께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35,000	35,000	35,000	-	-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 울정원 조성	0	60,000	60,000	60,000	순증
재무활동	734,041	674,041	674,041	△60,000	△8%
여유자금 예치	734,041	674,041	674,041	△60,000	△8%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3,000	-	-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27회 정례회) 대비 정책사업비(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0% 초과(236.8%) 변경

※ 2025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사업’ 신설 및 여유자금 예치항목 감액 변경(20% 이내 변경)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는 지난 '08년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등을 지출하고자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을 운용한 바, 지난 '24년 7월, 별도 조례를 신설하여¹⁾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지난 3월 30일 행정안전부는 경북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그리고 경남 산청·하동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영향구역이 여의도 면적(290ha)의 166배, 서울시 면적(60,523ha)의 80%, 제주도 면적(185,027ha)의 26%에 해당되는 48,239ha로 발표한 바,²⁾
 - 서울특별시는 동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복구 및 구호지원을 하고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것임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수입계획의 경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³⁾에서 50억원을 예수 즉, 재원을 차입하여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당초 수입계획에 없던 수입과목(예수금수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

1)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2024. 7.15)

2) 행정안전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주불진화 완료” (보도자료), 2025. 3.30

※ 축구장 1개소(0.714ha) 규모로 환산하면 67,400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됨

3)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에는 당초 정책사업(재무활동)에 1조 5,690억 2,000만원을 지출계획한 바, 정책사업내 세부사업간 증감 조정(50억원)함에 따라 의회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정책사업(재무활동)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출액(지출계획액)	지출계획 변경액	변경비율
재무활동	계	1,569,020	-	-
	기금 및 회계 용자 지원	1,468,954	5,000	0.3
	여유자금 예치	100,066	△5,000	△4.9

〈표 3-1〉 수입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873,441	7,873,441	5,000,000	174.0%
세외수입	100,898	100,898	-	-
경상적세외수입	98,177	98,177	-	-
이자수입	98,177	98,177	-	-
공공예금이자수입	98,000	98,000	-	-
기타이자수입	177	177	-	-
임시적세외수입	12,721	12,721	-	-
보조금반환수입	12,721	12,721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443	2,443	-	-
위탁비반환수입	10,278	10,278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2,543	7,762,543	5,000,000	180.9%
보전수입등	1,162,543	1,162,543	-	-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	-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	-
내부거래	1,600,000	6,600,000	5,000,000	312.5%
예탁금 및 예수금	-	5,000,000	5,000,000	순증
예수금수입	-	5,000,000	5,000,000	순증
전입금	1,600,000	1,600,000	-	-
기타회계전입금	1,600,000	1,600,000	-	-

-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정책사업중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당초 지출계획(21억 3,600만원)보다 236.8%, 50억원 증액된 71억 9,600만원을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 지출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873,441	2,873,441	7,873,441	5,000,000	174.0%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136,400	2,196,400	7,196,400	5,060,000	236.8%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136,400	2,196,400	7,196,400	5,060,000	236.8%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51,600	351,600	351,600	-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000	1,000,000	6,000,000	5,000,000	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	1,000,000	6,000,000	5,000,000	500.0%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 케팅 운영	277,000	277,000	277,000	-	-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472,800	472,800	472,800	-	-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35,000	35,000	35,000	-	-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 울정원 조성 ⁴⁾	-	60,000	60,000	60,000	순증
재무활동	734,041	674,041	674,041	△60,000	△8.2%
여유자금 예치	734,041	674,041	674,041	△60,000	△8.2%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3,000	-	-

4)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5. 2.25)하여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21억 3,600만원)중 '대한민국 정
원산업박람회 서울공원 조성'을 신설(6,000만원) 하여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21억 9,600만원으로 증
액 조정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사안에 해당되며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⁵⁾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바,

-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⁶⁾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과거 기금지출 사례를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월	해당 자치단체	지출액	지출사유
계		-	2,798	-
2025	1	전남 무안	500	제주항공 항공기사고 지원
	3	경남, 경북, 울산 등	500	산불 피해지역 재난구호금
2024	1	충남 서천	100	서천 특화시장 화재 복구비 지원
	7	충남	100	집중호우 복구비 지원
2023	7	세종, 충북, 충남, 경북, 전북	600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8	전북	198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 이동식 화장실 50동 긴급 지원
2022	3	강원, 경북	400	산불 피해복구비 재난구호금
2021	7	전남, 경남	400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5)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6)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더욱이 지난 5년간 동 기금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해·재난구호지원을 위해 기금이 지출된 바,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서천 특화시장 화재 복구비 지원 등 27억 9,800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어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7)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의 세부사업인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은 당초 1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①지난 '24년 12월,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지원(5억원)과 ②'25년 3월, 산불 피해지역 재난구호금(5억원)으로 이미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 동 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40억원)8)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재원(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출계획한 40억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하여 영남 지역에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에 보조금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9), 「지방보조금

7)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8) 지원항목 및 규모 : 3개 항목 40억원 지원

- 중장비 : 13억원 지원 (임차 방식)
- 농기계 : 17억원 지원 (구매 방식)
- 임시주택 : 10억원 지원 (구매 방식)

9) 행정안전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330

□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

○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법」 10)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1)에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법정 절차를 이행한 후¹²⁾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다음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50억원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예수하여 동 기금에 수입계획하려는 것이므로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도 예수금에 대한 이자, 즉 예수금 이자항목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기금으로 50억원의 재원을 예탁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¹³⁾는 예수금에 대한 이

- 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참조)

10) 「지방보조금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 7. 생략

1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과-3336 ('25. 4.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 제출(대외협력기금)”

13)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 및 용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매년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수금 및 용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수금 및 용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의 분은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은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용자받은 기관이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연체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

자를 분기별 특정일까지 납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에 50억원의 예수금 수입을 신규로 계획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 의무가 필수적임에도 지출계획에는 예수금 이자상환을 지출계획 하지 않고 있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시행규칙 위반 소지가 내재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출계획한 40억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하여 영남 지역에 ①농기계(17억원, 구매 방식)와 ②임시주택(10억원, 구매 방식)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증액하려는 것이나,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목적을 정하여 지정기탁하는 것이라 하여도 농기계 구매와 임시주택 구매는 사실상 **자본보조**일 수 밖에 없어 해당 기금의 지출과목이 적정한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신속히 추진하는 사안이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지난 4월 1일, 14시경 의안을 접수한 이후 당초 제안이유중 “경상북도”를 “영남 지역”으로 수정하여 4월 2일, 16시경 안전 수정을 요청한 바, 안전작성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용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총당한다. (이하 생략)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4.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670
----------	------

제출년월일 : 2025년 4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48,238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 75명, 주택전소 3,265채, 이재민 6,323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
- 나. 특히 경상북도 및 안동시 등 관할 5개 시군에 피해가 집중되어 주택전소 3,239채, 인명피해 59명이 발생하였고 트랙터 등 농기계 2천여 대가 파손되는 등 시설물 정비와 이재민, 농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상황임
- 다. 서울시는 영남 지역의 피해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비와 농기계, 임시주택 등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함
- 라.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계획 변경사항]

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으로부터 자금을 예수받기 위한 “예수금수입” 항목을 신설 하고 예산액 5,00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함

나. 이에 따라 수입계획을 당초 2,873백만 원에서 7,873백만 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873,441	7,873,441	5,000,000	174%
세외수입	100,898	100,898	-	-
경상적세외수입	98,177	98,177	-	-
이자수입	98,177	98,177	-	-
공공예금이자수입	98,000	98,000	-	-
기타이자수입	177	177	-	-
임시적세외수입	12,721	12,721	-	-
보조금반환수입	12,721	12,721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443	2,443	-	-
위탁비반환수입	10,278	10,278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2,543	7,762,543	5,000,000	181%
보전수입등	1,162,543	1,162,543	-	-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	-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	-
내부거래	1,600,000	6,600,000	5,000,000	312%
예탁금 및 예수금	-	5,000,000	5,000,000	신설
예수금수입	-	5,000,000	5,000,000	신설
전입금	1,600,000	1,600,000	-	-
기타회계전입금	1,600,000	1,600,000	-	-

[지출계획 변경사항]

가. 정책사업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항목의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에 5,000백만 원 증액 편성함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873,441	2,873,441	7,873,441	5,000,000	174%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136,400	2,196,400	7,196,400	5,060,000	237%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136,400	2,196,400	7,196,400	5,060,000	237%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51,600	351,600	351,600	-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000	1,000,000	6,000,000	5,000,000	5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	1,000,000	6,000,000	5,000,000	500%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 마케팅 운영	277,000	277,000	277,000	-	-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472,800	472,800	472,800	-	-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35,000	35,000	35,000	-	-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	0	60,000	60,000	60,000	순증
재무활동	734,041	674,041	674,041	△60,000	△8%
여유자금 예치	734,041	674,041	674,041	△60,000	△8%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3,000	-	-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27회 정례회) 대비 정책사업비(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0% 초과(236.8%) 변경

※ 2025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사업’
신설 및 여유자금 예치항목 감액 변경(20% 이내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대외협력과 이예리(☎ 2133-6654)